

『외환거래기본약관』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6. 06. 07

2. 개정내용: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상품명: 『외환거래기본약관』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- 제 6 조 (기재생략)</p> <p>제 7 조(준용규정)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[추심에 관한 통일규칙], [전자무역업무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(구 하나은행)]을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제 8 조(약관의 변경)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,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 다만,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.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③ 은행은 제 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④ 거래처가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상품명: 『외환거래기본약관』</p> <p>제 1 조- 제 6 조 (기재생략)</p> <p>제 7 조(준용규정)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[추심에 관한 통일규칙], [전자무역업무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]을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제 8 조(약관의 변경)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,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. ② 제 1항의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, 전자우편, 휴대폰 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(제 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) 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③ 은행은 제 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. 다만, 제 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④ 이용자가 제 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상품명 변경</p> <p>(구 하나은행) 삭제</p> <p>(약관의 변경) 일부 표현 수정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비적용